



[별지 제33호서식]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 70g/㎡

등부 2020 년 제 8059 호

인 증 서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다.

일시: 2020년 8월 27일 10시 00분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 층(여의도동, 쓰리 아이에프씨) 회사 본점 회의실

| | |
|----------------|----------|
| 총 주 주 수: | 1명 |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900,000주 |
| 출석 주 주 수: | 1명 |
| 출석주주가 소유한 주식수: | 900,000주 |



의장인 사내이사 설대석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족수 참석으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의 안 1. 정관 변경의 건

의장은 제1호 의안을 상정하면서, 회사의 별첨과 같은 정관 변경안을 배부한 회의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원안대로 승인을 구한 바, 출석한 주주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하다.

의 안 2. 변경 영업인가 신청의 건

의장은 제2호 의안을 상정하면서,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변경 영업인가 신청 승인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묻은 바, 출석한 주주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하다.

의 안 3. 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설대석이 본 총회를 끝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출석한 주주에게 이를 보전하여 줄 것을 구한바, 출석한 주주 이의 없이 다음 사람 등을 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승인 가결하다.

| | |
|---------|-----------------------|
| 사내이사 | 박 래 익 (1964년 10월 8일생) |
| 기타비상무이사 | 조 주 현 (1953년 5월 30일생) |

기타비상무이사 신 유 철 (1965년 3월 1일생)

의 안 4.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감사 임채중이 금일 사임하였으므로 출석한 주주에게 이를 보선하여 줄 것을 구한바, 출석한 주주 이의 없이 다음 사람을 본 회사의 감사로 선임하기로 승인 가결하다.

감 사 김 태 현 (1983년 12월 21일생)

이상으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10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장이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하다.

일자: 2020년 8월 21일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의장, 사내이사: 설대석 (인)



* 별첨: 신규대비표

| 변경 전 | 변경 후 |
|--|--|
| <p>제 5 조 (광고 방법)</p> <p>회사의 광고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으로써 <u>행한다. 2 개 이상의 신문에 광고할 경우에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광고한다.</u></p> | <p>제 5 조 (광고 방법)</p> <p>회사의 광고는 <u>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srks-rei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광고하고, 2 개 이상의 신문에 광고할 경우에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u>광고한다.</u></u></p> |
| <p>제 10 조 (주권의 종류)</p> <p>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10,000 주권의 8 <u>종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어느 주주가 소유하는 모든 주식을 표창하는 하나의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와 다른 종류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u></p> | <p>제 10 조 (주권의 종류)</p> <p>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10,000 주권의 8 종으로 한다.</p> |
| <p>제 10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회사가 제 11 조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 <p>제 10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회사가 제 11 조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u>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단, 본 조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 10 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u></p> |
| <p>제 12 조 (신주인수권)</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p> | <p>제 12 조 (신주인수권)</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p> |

을 하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이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라고 하면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

2. 제 2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1 조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2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하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이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라고 하면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

2. 제 2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1 조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2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단, 주식에 대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시점부터는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4.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등 부투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4. 기타 「상법」 및 부투법상 「상법」 제 434 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제 41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4. 부투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단,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변경체결 또는 해지(자산관리회사의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을 제외함


②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4.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변경체결 또는 해지(자산관리회사의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15. 기타 「상법」 및 부투법상 「상법」 제 434 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제 41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해당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월 오십만 (500,000)원으로 한다.

| | |
|--|---|
| <p>제 49 조 (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p> <p>①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신설)</p> | <p>제 49 조 (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p> <p>①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는 제 26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 <2020. 8. 27.></u></p> <p>제 1 조 (시행일)</p> <p>이 개정 정관은 2020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
|--|---|



등부 2020 년 제 8059호

인 증

위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의

2020년 08월 27일 자 임시주주총회 -----

회의록에 대하여 주주 켄달스퀘어로지스틱스프로퍼티스 주식회사 , 의장 사내이사

설대석 등대리인 손형진 은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20년 08월 28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 한수복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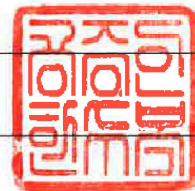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8 4층 403호(청진동, 진학회관)

공증인

한수복

아 래



1.진술서및확인서 2.주주명부 3.위임장및인감증명서 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정관